

---

제 6 장  
기타 사례

## 제6장 기타 사례

### 사례 47 2021대구조정68·69 정정·손배청구

신청인 유형	개인
피신청인 유형	인터넷신문
처리결과	조정성립(유감 표명, 반론권 보장)

신청인이 시의원 구속을 모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유감을 표명하고, 향후 관련 보도를 할 경우 반론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사례

#### ■ 보도내용

피신청인 언론사는 ○○지역 주요 인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한 지역 언론인이 'A당에서 제명된 D 씨(신청인)가 시의원 B와 모의하여 시의원 C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려고 했다'는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'고 보도했다.

#### ■ 신청이유

신청인은 B 의원과는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불과해 C 의원을 구속시키려 모의한 바가 없음에도, 피신청인 언론사는 본인에 대한 취재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
#### ■ 조정결과

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고, 지역에 제명 당원이 신청인 1명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. 그러나 중재부는 보도 소재가 된 SNS 내용과 제명 당원이라는 표현, 보도 이후 주위 사람들이 신청인에게 연락한 점을 고려하면, 신청인이 보도에 특정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. 중재부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고, 향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신청인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했고,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.



### ■ 조정대상보도

부동산 이해충돌방지 의혹으로 권익위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C(○○시의회, ◇◇·△△·□□)에 대해 전 A당원들이 모여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구속시키자는 모의를 했다는 진술이 ○○의 주요인사 200여 명이 모인 한 단독방에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.

게시글을 올린 이는 지역 언론인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론직필을 강조하며 그동안 도내 지역 언론 활동을 한 것으로 볼 때 발언의 신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. 특히 거론된 해당 의원은 모 지방언론사를 비롯 A당에서 제명된 D 모 씨와 모의를 했다는 발언까지 나와 진위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. [후략]

### ■ 조정성립사항

#### 피신청인 유감 표명 및 향후 반론권 보장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신청인이 특정 시의원과 모의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, 향후 신청인에 관한 취재와 보도를 할 때에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.

**사례 48** 2021서울조정2049·2050 정정·손배청구

신청인 유형	개인
피신청인 유형	인터넷신문
처리결과	조정성립(사과문 게재 등)

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라고 보도한 사안과 관련, 기사를 열람차단한 후 사과 및 정정보도를 게재하고,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

**■ 보도내용**

피신청인 언론사는 장애인단체 직원인 A 씨가 동료 B 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업무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센터에 피해를 접수했으나, 사실은 A 씨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이며, 그동안 피해자인 척 사건의 본질을 호도해왔다고 보도했다.

**■ 신청이유**

신청인 A 씨는 ◇◇도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한 결정문을 근거로 자신이 가해자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. 결정문은 장애인단체 대표와 직원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, 과도한 업무량 부여, 연차휴가 사용 불허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적시했다. 신청인은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, 심적 고통도 겪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
**■ 조정결과**

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오보를 인정하고, 조정대상보도문 열람차단, 사과를 포함한 정정보도문 게재, 손해배상 지급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.

**■ 조정대상보도**

※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



## 조정성립사항

### 정정보도문(사과보도문 포함)

**보도제목:** [정정보도] <‘직장 내 괴롭힘’ 피해자, 알고 보니 가해자? “피해자인 척”> 관련  
**본문내용:**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“◇◇ ○○군의 한 장애인단체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연일 언론에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, 이 모든 게 거짓과 기만이라는 주장”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사실확인 결과 A 씨는 “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”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. 이에 해당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허위보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

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
### 보도방법

- 인터넷 홈페이지 □□/◇◇면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방식으로 게재한다.
- 네이버, 다음 등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.

### 열람차단

-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한다.

### 손해배상

-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5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**사례 49** 2021서울조정2286 정정청구

신청인 유형	개인(국회의원)
피신청인 유형	인터넷신문
처리결과	조정성립(사진 캡션 수정 등)

국회의원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시행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풍문을 보도한 사안과 관련,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진 캡션과 기사제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

**■ 보도내용**

피신청인 언론사는 ◇◇ ○○동 민간도시개발을 두고 시행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고, 신청인이 지역개발사업에 뛰어난 대기업 관계자에게 특정 시행사와의 협력을 강요하는 등 특정 시행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고 보도했다. 해당 보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다.

**■ 신청이유**

신청인은 지역의 타 매체 보도를 통해 시행사를 가장한 투기 세력의 횡포로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등 선의의 민간도시개발사업자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후, 대형건설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국정감사 질의 준비를 하면서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였다고 했다. 그런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불특정 주민의 말을 인용, 신청인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악의적으로 매도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
**■ 조정결과**

신청인은 보도에 게재된 신청인 사진을 열람차단해 줄 것을 희망했으나,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에 대한 의혹 보도가 핵심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. 중재부는 타협안으로 신청인 사진 하단의 캡션과 주제목 및 부제목을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되, 정정보도 대신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권유했고, 양 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.



## 조정대상보도

**[전략]** ◇◇광역시 □구 ○○동 토지를 둘러싸고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. 한 시행사는 수십 년간 미뤄왔던 개발 사업 열기가 피어오르자 ‘약정’ 방식으로 지역 토지에 깃발을 꽂아 논란에 휩싸였다. 땅값을 더 쳐주겠다며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시행사도 등장했다. 급기야 주민들 사이에선 ‘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시행사의 뒤를 봐준다’는 이야기까지 나왔다. **[중략]** 이런 상황에서 B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둘러싼 풍문도 돌았다. 복수 주민들은 “B가 A C당 의원(◇◇ □구) 비호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”고 주장했다. 한 주민은 “A 의원이 D건설 관계자를 불러 ‘B와 손을 잡으라’고 강요했다는 소문도 퍼졌다”면서 “A 의원과 B 대표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”고 했다. D건설은 B의 경쟁 시행사인 △△△△을 출자한 회사다. **[후략]**

## 조정성립사항

### 반론보도문

**보도제목:** [반론보도] <단독> ‘○○○○’의 향기가 ... ◇◇ ○○동 개발사업 둘러싼 잡음> 관련

**본문내용:** 본 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.

이에 대해 A 의원 측은 “대형건설사 관계자를 불러 ‘B와 손을 잡으라’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, ◇◇ ○○동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장 교란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었을 뿐 특정 시행사를 밀어주는 등 비호한 사실이 없다”고 밝혀왔습니다.

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
### 보도방법

- 인터넷 홈페이지 특종/단독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,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.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.
-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. 단, 박스 처리, 음영 처리,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.
-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네이버,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.

## 기사 수정사항

### 〈주제목 수정〉

(수정 전) '○○○○'의 향기가 ... ◇◇ ○○동 개발사업 둘러싼 잡음

(수정 후) ◇◇ ○○동 개발사업 둘러싼 잡음

### 〈부제목 일부 수정〉

(수정 전) '비호설' A 측 “대형 건설사 시장 교란 행위 막으려는 것”

(수정 후) 대형 건설사 뒤늦게 뛰어들어 논란 가열



## 사례 50 2021서울조정2395 손배청구

신청인 유형	공공단체
피신청인 유형	방송
처리결과	각하

개인이 아닌 단체·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,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은 업무 대리권이 있는 담당자의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, 직원들의 투기 의혹 보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정 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

### ■ 보도내용

피신청인 언론사는 A공사의 ◇◇지역본부 ○○○동 사업소장이었던 전직 직원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□□구 ○○○동 일대에서 투기를 한 의혹이 있고, △△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역에도 빌라 소유주 중 A공사 직원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92명에 이르는 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. ☆☆의 산업단지 후보지에서도 A공사 직원과 이름이 같은 9명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있어 이들이 A공사의 직원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.

### ■ 신청이유

신청인 A공사는 ○○○동 ◎◎마을 일대에서 무허가건물을 이용하여 투기를 했다는 전 직원은 ◎◎마을 사업시행자로 A공사가 지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으로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. 또한 이 사건 방송 전, 직원과 빌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대조를 통해 ◎◎마을 빌라 소유주들은 동명이인들일뿐 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, ☆☆ 산업단지 시행사는 신청인 공사가 아님에도 △△구 및 ☆☆에서 공사 직원과 동명이인들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여 공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
### ■ 조정결과

피신청인 언론사는 이 사건 조정 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접수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했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방송 전날 신청인 홍보 담당 직원에게 방송 일정을 고지했고, 보도 직후 신청인 홍보 담당 직원이 제작진에게 연락해왔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. 한편 신청인 공사는 보도 당일에 홍보 담당 직원이 보도를 인지한 것은 인정하나, 경영진이 보도를 인지한 이후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. 중재부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은 조정 신청 업무의 대리권이 있는 대외 홍보 담당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함이 상당하여, 이 사건 조정 신청은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.

## 조정대상보도

재개발 앞둔 마을.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산업단지 후보지 등 개발호재가 예상되는 곳곳에서 A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 됐습니다. **[중략]**

(나레이션) A공사 전 직원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토지는 무허가 건물로 화장실, 부엌과 같은 주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.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토지의 옆 건물 역시 전 직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.

(주민대표협의회 관계자) 이게 A공사 전 직원 딸 거예요. 20XX년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A공사가. 그리고 20YY년에 본부가 들어왔고 20ZZ년에 정식 시행사가 됐으니까. A공사가 시행사가 돼서 개발을 할 걸 알고 있었던 거죠. (A공사 전 직원) 딸들은 20ZZ년 정도에 샀더라고요.

(나레이션) 전 직원과 그의 자녀들이 ◎◎마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20ZZ년을 전 후로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는 건데요. 이 가운데 전 직원은 20ZZ년 A공사 ◇◇지역본부 ○○○동 사업소장을 지냈던 걸로 알려져서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. **[중략]**

(나레이션) 좀처럼 오르지 않는 빌라의 매입가격이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꺾은 꼴이 됐 거죠. 해당 지역의 빌라 소유주 448명 가운데, A공사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92명인데요. 이중 근무지와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인접한 동명이인은 총 34명에 달합니다. **[중략]**

◇◇뿐만 아니라 ☆☆에서도 A공사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이곳은 ☆☆시에서 추진하는 ▷▷▷▷▷산업단지 후보지인데요. ☆☆시는 20VV년 A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성 문제로 현재 협약이 해지된 상황. **[후략]**